

직권조치결과 공고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2020년 06월 24일

다산동장 인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 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김**	김** 1968-12-12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8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06-24
박**	박** 1965-10-05	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11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06-24
김**	김** 1977-01-11	서울특별시 중구 다산로5길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0-06-24